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
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이재관·최혁진·장종태
안도걸·문진석·이정문
허성무·강준현·정을호
장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반도체,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재·부품·장비기업을 공격하는 소위 ‘우회 해킹’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위와 같은 소재·부품·장비기업에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신고의무가 없어 핵심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취약한 상황임.

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·부품·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의2 신설 등).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
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침해사고의 신고 등) ①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다)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

아니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등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·방법 및 절차,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장의 제목 “보칙”을 “보칙 및 벌칙”으로 한다.

제77조 중 “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”을 “직원,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과 제52조의2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”으로 한다.

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8조(과태료) ①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침해사고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2조의2(침해사고의 신고 등)</u> ①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다)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

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등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·방법 및 절차,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장 보칙

제77조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)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,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·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

제12장 보칙 및 별칙

제77조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) -----

직원,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과 제52조의2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-----

본다.

<신 설>

-----.

제78조(과태료) ① 제52조의2제1
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신고를
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
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·
징수한다.